

#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제3720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5. 11. 17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김포시민에게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통행료 지원 및 지원 대상 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지원 기준 및 환수 (안 제5조 및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예정(비용추계서 별첨)
- 다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5. 9. 30. ~ 10. 21. (22일)
  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 - 2) 부서협의결과
    - 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    - 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   - 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 - 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    - 가) 중앙부처 :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
    - 나) 경기도 : 도로정책과

##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김포시민에게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통행료”란 김포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이 일산대교를 통과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
**제3조(통행료 지원)**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4조(지원 대상)** ①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시민이 소유한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시간대에 통행하는 차량으로 한다. 다만,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과 임시·대체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.

1.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
2.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김포시 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
2.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
3. 사업용(영업용 포함) 및 임차차량

**제5조(지원 기준)** ① 지원금액은 편도당 통행료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.

② 지원횟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상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, 지원 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6조(환수 등)**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시민에게 통행료를 환수하고, 그 사실이 밝혀진 날부터 1년간 통행료 지원을 중단한다.

**제7조(업무협약)** 시장은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건설도로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건설도로과장 양수진
	팀장 직위·성명	도로건설1팀장 심재성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시설서기 도유진(☎2437)

## 지방자치법

**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  
가. ~ 카. (생략)
2. 주민의 복지증진  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
나. ~ 차. (생략)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3. ~ 7. (생략)

**제28조(조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## 지방재정법

**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(생략)

## 자동차관리법

제7조(자동차등록원부) ① 시·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(備置)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략)

⑥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, 차대번호, 차명, 사용본거지, 자동차 소유자, 원동기형식, 구동축전지 식별번호(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), 차종, 용도, 세부유형, 구조장치 변경사항, 검사유효기간,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,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비 용 추 계 서

**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**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제3조(통행료 지원)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김포시민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

**2. 비용추계**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연간 지원금 : 3,000,000천원 ※ 2026년 지원금 : 15억원(6개월분)  
 : 35천대×1,200원×242일(평일)×50%(지원율)×60%(시민50%+증가분10%)  
 ※ 평일 출·퇴근 시간(06~09시, 17~20시) 일평균 통행량 : 35,020대('23. 1. ~ 6.)
- 시스템 구축비 등 : 150,000천원(통행료 지원 시스템 구축)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	계
총 소요액		1,65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13,650,000
일산대교 통행료 지원	지원금	1,5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13,500,000
	구축비	150,000	-	-	-	-	150,000

다. 재원조달방안 : 매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- 예산법무과 협의필

**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**

- 해당없음

**4. 작성자 : 교통건설국    건설도로과    과장 양수진    팀장 심재성**

## 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	
세 입	1,65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13,650,000	
지방세 수입	1,65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13,650,000	
세 출	1,65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13,650,000	
지원금	1,5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13,500,000	
구축비	150,000	-	-	-	-	150,000	
재원 조달	1,65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13,650,000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1,65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13,650,000
	지방세수입	1,65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13,650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그 밖의 사항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